

##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(종류) 제2항 제5조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 5 조(교부 및 등록)중 “간사가”를 “사무국장이”로 한다.

제 8 조(재교부 및 폐기)제1항 및 제2항 내용중 “간사”를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「별표」 공인의 규격 “4”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종류) 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부산직할시 사하구 <u>의회사무과장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5조(교부및등록) 공인은 <u>간사</u>가 새겨 이를 교부하되,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재교부및폐기)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<u>간사</u>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「별표」</p> <p>공인의 규격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<u>사무과장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인 : 2.1센티미터</p>	<p>제2조(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....<u>의회사무국장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교부및등록) .....<u>사무국장이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8조(재교부및폐기) 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사무국장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 <u>사무국장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「별표」</p> <p>공인의 규격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<u>사무국장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인 : 2.1센티미터</p>